

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

사 건 2000가합000 손해배상(산)

신 청 인(원고) ㅇㅇㅇ 외 1

피신청인(피고) 주식회사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20 ○ ○ . ○ .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"금 51,798,742원"은 "금 62,784,905원"의, "금 22,399,371원"은 "금 27,892,453원"의 잘못임이, 청구취지 중 "금 62,784,905원"은 "80,437,736원"의, "금 27,892,453원"은 "금 49,958,490원"의 잘못임이 각 명백함으로 판결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서류

1. 송달료납부서 1통.

2000. 0. 0.

위 신청인(원고) 1.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 2.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소송기록보관법원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 련 법 규	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	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) ·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, 제425조, 제396조)	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기 타		권으로 또는 당시	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·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